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9-02-22

서 울 고 등 법 원

제 1 행 정 부

판 결

사 건	2015누5809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원고, 피항소인	A 주식회사
	[redacted]
피고, 항소인	[redacted]시 [redacted]구청장
제 1 심 판 결	서울행정법원 2015. 8. 21. 선고 2015구합52487 판결
변 론 종 결	2018. 12. 11.
판 결 선 고	2019. 1. 15.

주 문

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1. 청구취지

피고가 2014. 11. 7.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,696,473,900원, 농어촌특별세 84,823,690원, 지방교육세 169,647,39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9-02-22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하고,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,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.

○ 제1심판결서 11쪽 11~14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.

한편 집합투자기구가 등록을 마치기 전에 행한 부동산 취득도 사법상 유효하다고 볼 수 있고,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 이 사건 투자신탁에 따라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설정·설립되어 있었다. 특히 원고가 2012. 9. 3.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이 사건 집합투자회사가 2012. 8. 14.과 같은 해 9. 7. 금융위원회에 등록신청을 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2. 9. 26. 그 등록신청이 수리되었으므로, 등록 요건을 생략한 채 부동산을 취득하여 이 사건 감면규정에 따른 취득세 등 감면만 받고 부동산집합투자기구를 해산해버리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도 없었다.

○ 제1심판결서 13쪽 15~19행(각주 포함)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.

또한 2015. 7. 24. 법률 제13448호로 개정되어 2015. 10. 25.부터 시행된 자본시장법은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 두 가지로만 구분하여 규율체계를 단순화하고,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모두에 대하여 사전등록이 아니라 설정·설립 후 2주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사후 보고하는 것으로 그 규제를 완화하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9-02-22

였다(제249조의6, 8, 10, 20).

2. 결론

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,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여상훈

판사 견종철

판사 장철익